



제400회 국회 (정기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영업소 등에 대한 관할관청 명시〉
■ 김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5380호)

2022.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용 훈

목 차

I . 김태호의원 대표발의(2115380)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영업소 등에 대한 관할관청 명시 (안 제28조의2 신설)	3

I. 김태호의원 대표발의(2115380)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태호의원 등 19인

나. 제 안 일 : 2022. 4. 25.

다. 회 부 일 : 2022. 4. 2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으로 매년 증가함에 따라 렌터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음.

한편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현행법상 렌터카 관련 행정사무 및 처벌권이 주사무소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사무소 외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지도·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렌터카 관련 사고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와 렌터카 관련 피해 감소를 위해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행정사무 및 처벌권을 그 소재지 관할 관청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건설업의 경우도 현장이 있는 지역의 지자체가 사업승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풀뿌리 민주주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도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사무 및 처벌권을 해당 지자체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소 및 예약소는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감소시키고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신설).

3. 검토의견

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영업소 등에 대한 관할관청 명시(안 제28조제2항)

1)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개정안은 영업소, 예약소 및 해당 지역에 등록된 차량을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관장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설치된 영업소 및 예약소 등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현행	개정안
제28조(등록) ①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28조(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소, 예약소 및 해당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대여사업은 통상 주사무소와 지역별 영업소를 두고 있음. 현행 법상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업무내용에 따른 관할 관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업무별 관할 관청 】

업무 내용	관할 관청	관련 근거 규정
자동차대여사업 사업계획 등록(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 제29조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등록, 사업계획의 변경 제한, 공동운수협정,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폐업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제10조제2항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영업소의 명칭변경, 예약소의 설치 또는 변경, 낡은 차의 대체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변경)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제10조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
영업소 관할관청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영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주사무소에 대해서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 관장 영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관청 관장	「여객자동차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47조
등록취소 등 등록기준과 관련된 사항 및 사업정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여객자동차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47조 단서

※ 관계 법령 재구성

현행 제28조제1항은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등록) 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3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동차대여사업을 포함)을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4조는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영업소”, 차고, 운송부대시설 등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관할관청)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또는 이 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관장하는 경우 외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 다만,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면허 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하고, 주사무소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에 있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인접한 도의 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한다

제4조(영업소 등의 관할관청)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다음 각 호의 영업소 등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

1. 영업소
2. 정류소
3. 차고
4. 운송부대시설
5. 여객자동차터미널

그런데, 국토교통부 훈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47조 단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 등록취소 등 등록기준과 관련된 사항 및 사업정지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객자동차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47조(영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은 주사무소에 대하여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이 관장하고, 영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관청이 관장한다. 다만, 등록취소등 등록기준과 관련된 사항 및 사업정지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이 관장한다.

그 외에도 자동차 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등록,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또한 주사무소 소재지 관청에서 관할하고 있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준용 규정)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제한, 공동운수협정,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폐업,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19조(제1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등록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①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소의 명칭변경
2. 예약소의 설치 또는 변경
3. 낡은 차의 대체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낡은 차의 대체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변경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보유 차고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생략)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는 영업소의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상황 확인 및 지도·감독 등의 사무를 수행하면서도 법

령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을 뿐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47조(영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은 주사무소에 대하여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청이 관장하고, 영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관청이 관장한다. 다만, 등록취소등 등록기준과 관련된 사항 및 사업정지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이 관장한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영업소 관할관청은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소 관할관청이 행사할 수 있는 행정사무 및 처벌권은 제한되고 주사무소 관할관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영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의식 하에 제안된 것임.

이에 개정안은 영업소의 등록 관할관청이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라는 점을 상향입법하여 영업소의 등록, 사업계획의 변경 등록,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영업소 관련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가 영업소 소재지 관할관청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발의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안번호 제2112506호¹⁾ 및 제2114505호²⁾)이 우리

1) 오영훈의원 대표발의,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2.04.25. 상정

2)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2.04.25. 상정

위원회에 계류 중임.

2) 정부 및 관련단체 의견

가) 국토교통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는 사고에 따른 수리비 청구, 예약금 환급 거부 등 사적 계약 관련 소비자 분쟁이므로, 소비자 피해(분쟁) 감소를 위해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의 행정사무에 대한 관장업무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개정안은 실익이 없음.

개정안에 따르면 주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일괄·신속 처리하던 변경 신고 업무가 전국에 산재된 다수의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로 분산되므로 대여사업자 불편과 비용을 초래하고 시·도지사의 행정력 및 비용이 증가되는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됨.

국토교통부는 영업소등 관할관청에게도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 권한(등록 취소는 제외)을 부여하여 영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 등을 검토 중³⁾이라는 설명임.

나) 법제처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영업소 및 차고는 「여객자

3) 현재는 관리감독의 강화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및 업계 의견 수렴을 추진 중이라는 설명임.

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4)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미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자동차대여사업의 관할관청의 경우에만 법으로 상향하여 규정하여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관할관청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안 제28조제2항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보다는 시행규칙 제3조를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 경기도

등록차량 기준, 사업계획 변경 등을 현재 주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주사무소와 영업소 관할관청이 이원화되는 경우 타 행정기관 간 통보가 다수 이루어져야 하는 등 사업자 관리에 혼선이 우려됨.

현행 법령에서 주사무소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권한을 부여하고 영업소를 포함한 업체의 법령위반 횟수 및 경중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관할관청)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또는 이 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관장하는 경우 외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 다만,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면허 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하고, 주사무소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에 있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인접한 도의 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한다.

제4조(영업소 등의 관할관청)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다음 각 호의 영업소 등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

1. 영업소

2. 정류소

3. 차고

4. 운송부대시설

5. 여객자동차터미널

어지고 있는 것은 주사무소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영업소의 법령위반 사항에 대하여 주사무소의 책임이 따라야 하는 체계를 반영한 것임.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체계가 무의미해지고 주사무소의 책임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라) 충청북도, 충청남도

「행정기본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안 제28조의2제2항은 주사무소 관할관청에서 인가한 영업소의 사후관리를 영업소 소재지 관할관청으로 전가하여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는 내용임.

마)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등록·신고사항과 관련된 확인 요청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한 처분 요청에 따르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과 영업소 소재지 관할관청 간 행정절차 및 소요기간이 감소할 것임.

또한 영업소 소재지 관할관청의 처분 권한이 강화되면 영업소에 대한 주사무소의 관리·교육 등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것이므로, 교통사고 및 소비자 민원 감소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찬성함.

바) 서울·경기·강원자동차대여사업조합

현재도 영업소·예약소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은 법령에 의해 해당 지역 관할 관청에 있고, 교통사고 등에 대한 현장조사는 경찰 또는 손보사(공제조합) 등의 업무이므로 관할 행정관청이 변경되더라도 사고 예방이나 불법영업 관리 등에는 영향이 없음.

만약 행정업무 처리가 다원화되면 사업자는 전국 200여개의 행정관청 중 영업소·예약소를 관할하는 관청별로 등록 및 사업계획변경 신고 등을 하게 되어 수수료 등 비용, 업무과중 등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3) 검토의견

① 자동차대여업 주사무소 및 영업소 현황

자동차대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규모 자동차대여업의 경우 통상 주사무소가 서울에 위치하되 지역별로 영업소를 두어 렌터카가 실제로는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주사무소, 등록지 기준 렌터카 등록대수 현황】

* 2021년 12월말 기준

구분	지역	주사무소 등록대수	비율	렌터카 실제 소재지	비율
1	서울	942,820	83.72%	63,691	6.39%
2	제주	39,358	3.49%	247,338	24.80%
3	전북	35,244	3.13%	8,494	0.85%
4	부산	30,422	2.70%	77,871	7.81%
5	경기	26,951	2.39%	37,453	3.76%

구분	지역	주사무소 등록대수	비율	렌터카 실제 소재지	비율
6	대구.경북	9,769	0.87%	16,550	1.66%
7	대전	8,116	0.72%	7,053	0.71%
8	광주	6,289	0.56%	6,935	0.70%
9	충남	5,419	0.48%	8,152	0.82%
10	경남	4,790	0.43%	75,448	7.57%
11	충북	4,591	0.41%	9,932	1.00%
12	인천	4,109	0.36%	263,570	26.43%
13	전남	4,101	0.36%	166,989	16.75%
14	강원	2,327	0.21%	4,596	0.46%
15	울산	1,339	0.12%	2,573	0.26%
16	세종	546	0.05%	531	0.05%
합계		1,125,645	99.95%	996,645	100%

※ 자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 주사무소 등록대수와 렌터카 실제 소재지의 총합이 다른 것과 관련,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이를 대·폐차된 차량이 주사무소 등록 대수에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설명하고 있음.

이에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에 업무가 집중되는 경우 영업소에 대한 행정업무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점, 행정업무 지연시 소비자 피해 구제 또한 지연되고 렌터카 사고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제안 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②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업무별 관할 관청 규정 관련의 문제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서 영업소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토교통부 훈령인 「여객자동차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47조에서는 등록취소 등 등록기준과 관련한 사항 및 사업정지는 주사무소 관할관청이 관장하도록 되어있어 영업소 소재지 관청의 권한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즉, 현재 동법 시행규칙 및 업무처리 요령의 경우 일관적·통일적 체계가 부족한 측면이 있음.

③ 개정안에 따른 효과

현행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변경등록,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등록취소 등이 모두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 “주사무소에 대한 등록, 변경등록,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등록취소”는 모두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에서, “영업소에 대한 등록, 변경등록,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등록취소”는 모두 영업소 소재지 관할관청에서 이루어지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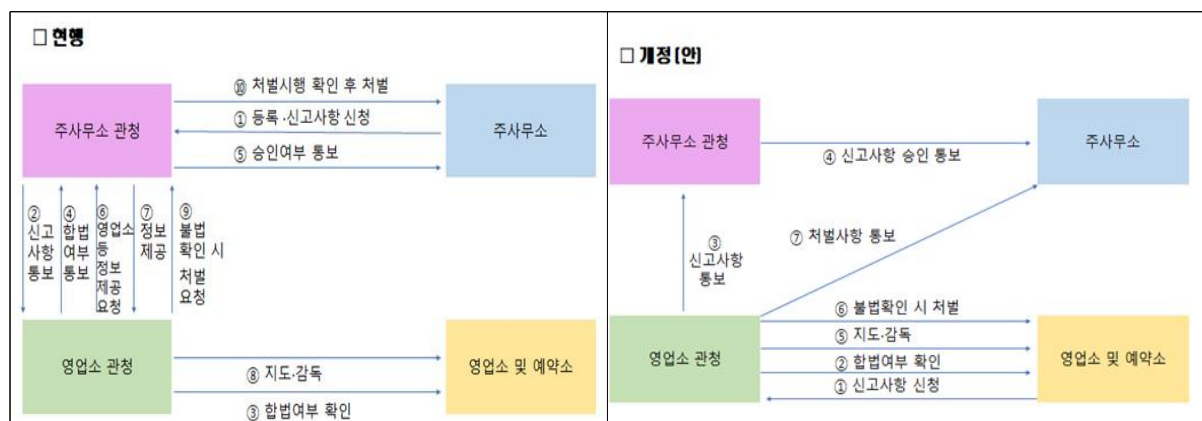
【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업무별 관할 관청 】

업무 내용	현행법상 관할 관청	개정시	
자동차대여사업 사업계획 등록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	주사무소에 대해서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 관장	영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관청 관장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등록, 사업계획의 변경제한, 공동운수협정,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폐업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영업소의 명칭변경, 예약소의 설치 또는 변경, 낡은 차의 대체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변경)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		
지도·감독	주사무소에 대해서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 관장		
	영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관청 관장		
등록취소등 등록기준과 관련된 사항 및 사업정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		

※ 관계 법령 재구성

예컨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서울에 주사무소, 제주도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 제주도 영업소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제주도지사가 서울시장에게 불법확인 처벌 요청을 하며, 서울시장은 처벌시행 확인 후 서울 소재 주사무소에 처벌을 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 제주도 영업소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제주도지사는 제주도 영업소에 대해 곧바로 처벌을 할 수 있으며, 제주도지사는 위 처벌 사항을 서울 소재 주사무소에 통보함.



※자료: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한편, 동법에서는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6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 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 기관에 내도록 규정되어 있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0조(수수료) 이 법에 따라 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6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 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 기관에 내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수료의 수준은 아래와 같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2조(수수료) ① 법 제80조에 따라 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라 한다)가 내야 할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별표 7] 수수료(제102조제1항 관련)

납부자	금액
6의2.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의 변경신고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가. 관할구역에서의 주사무소 이전과 영업소, 정류소, 그 밖의 운송부대시설의 명칭·규모 및 위치의 변경	1건에 2,000원
나. 자동차의 대차 및 폐차로 인한 자동차의 변경	1대 기본 30,000원에 자동차 추가 1대당 10,000원씩을 합산한 금액

※자료: 국토교통부

예컨대, A라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5개 영업소의 5대의 차량(영업소별 각 1대씩)에 대하여 자동차 변경 신고를 조합에 신청하는 경우 현행 법상으로는 주사무소 관할 조합이 이를 일괄 신고하고 주사무소 관할 조합이 수수료를 모두 수취함.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 영업소 조합별로 이를 신고하도록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르면 영업소 조합별로 동 수수료를 수취하게 됨.

현 행	개정시
■ 30,000원+ 40,000원= 70,000원 * 주사무소 관할 조합에 일괄 신고	■ 영업소 1= 30,000원 ■ 영업소 2= 30,000원 ■ 영업소 3= 30,000원 ■ 영업소 4= 30,000원 ■ 영업소 5= 30,000원 - 총계: 150,000원 * 각 영업소 조합별로 신고

※ 변경 신고를 위한 각 사업자의 인력 및 기타 경비 제외

※자료: 국토교통부

④ 개정안에 따른 업무처리의 이원화 문제와 관리·감독의 효율성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주사무소와 영업소 관할관청으로 이원화될 것이며, 이에 비효율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하는 의견들이 함께 제기되고 있음.

현재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영업소 등을 독립적인 사업계획 변경등록·신고의 주체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⁵⁾, 영업소 설치 현황 및 전체 대여사업용 자동차 현황 등을 주사무소 소재지 관시·도지사가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그리고 영업소의 법령위반행위에 따른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자동차대여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음.

5)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대여사업은 현행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등에 따라 직영으로만 영위되어야 한다는 설명이고, 국토교통부 훈령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시 시·도지사가 직영으로 경영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라 관할관청이 다원화되면, 다수의 영업소와 관련된 사업 계획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영업소 별로 등록·신고된 사항을 각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아 취합하여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업무가 이원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⑤ 자동차대여사업의 관할관청만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성

현재 동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영업소 등에 대해서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영업소 등의 관할관청)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다음 각 호의 영업소 등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

1. 영업소
2. 정류소
3. 차고
4. 운송부대시설
5.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에 자동차대여사업 영업소의 관할관청의 경우에만 법으로 상향하여 규정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함.

국토교통부는 현행 시·도지사 간 관장 사무를 변경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목적은 법률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동법 시행규칙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의 개정을 통해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 개정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영업소등 관할관청에게도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등록 취소는 제외)을 부여하여 영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 등을 검토 중⁶⁾이라는 설명임.

⑥ 경과조치의 필요성

개정안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관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청이 행한 처분 또는 종전의 행정청에 대한 신청·신고 등의 효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75

6) 현재는 관리감독의 강화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및 업계 의견 수렴을 추진 중이라는 설명임.